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53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9.

발 의 자:오기형·허종식·송재호

김한규 · 최기상 · 민병덕

신정훈 · 정태호 · 천준호

강민정 • 유정주 • 주철현

이원택 • 황운하 • 소병철

고영인 • 박광온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소형주택의 공급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가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, 다른 용도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.

이에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,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 중 "재건축사업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을 "재건축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1항제1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인가를 포함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	제54조(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
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	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
설비율)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	설비율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정비사업(「도시재정비 촉진을	
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	
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	
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	
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을 시행하는 경우 정	
비계획(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	
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	
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	
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	
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	
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	
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(이	
하 이 조에서 "법적상한용적	
률"이라 한다)까지 건축할 수	
있다.	<u>.</u>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	1
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	

권역(이하 "과밀억제권역"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 업 및 <u>재건축사업(「국토의 계</u>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 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----- <u>재건축사업</u>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